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장상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426
----------	------

발의년월일 : 2020년 04월 03일

발 의 자 : 장상기, 여 명, 김광수,
송명화, 오현정, 전병주,
박순규, 김태호, 이은주,
이승미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최근 청소년 범죄 및 일탈현상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교육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의 대책에 대해 법적 소년의 연령이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음.
- 이에 동 조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적 대책 보다는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준법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준법교육 및 학생 비행예방 등을 위한 예방교육, 상담지원, 연수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소년업무규칙」,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준법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준법의식”이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작용을 의미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준법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준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
 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방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학생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상담 지원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생의 상담·치유 등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상담 지원 등), 제7조(연수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안 제5조(예방 교육)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붙임]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047,900천원(연평균 209,5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09,5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화해분쟁조정지원’의 세세부사업인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및 회복증진 지원’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에 따른 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학교폭력실태조사및종합서비스제공’의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학생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상담·치유 등 지원에 따른 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학교안전망구축’의 세세부사업인 ‘학생 위기문자 상담망 운영’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준법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 대상 연수에 따른 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평화로운학교문화조성’의 세세부사업인 ‘학교폭력예방 연수운영’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물가상승률은 미반영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047,900천원(연평균 209,580천원)

-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비용 +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 비용 + 상담·치유 등 지원 비용 + 교사 대상 연수 비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제4조제1항 제2·4호, 안제8조	40,400	40,400	40,400	40,400	40,400	202,000
	안제4조제1항 제3호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88,500
	안제4조제1항 제5호, 안제6조	105,880	105,880	105,880	105,880	105,880	529,400
	안제7조	45,600	45,600	45,600	45,600	45,600	228,000
소계(b)		209,580	209,580	209,580	209,580	209,580	1,047,900
□총 비용(b-a)		209,580	209,580	209,580	209,580	209,580	1,047,900

○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비용 ≙ 202,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지원협력체계구축비용)_i = 202,0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2020년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및 회복증진 지원’ 예산 준용

- 기간 : 2020.3. ~ 2021.2.

- 내용 :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을 위한 관계회복 조정 기구 운영,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와 관계조정 회복 기구 연계, 희망학교(희망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와 전문단체로 구성(관계회복 조정기구 협의체)

- 소요예산 : 40,400천원

· 운영비		38,840	천원
- 분쟁조정 기구 활동 수당	80,000원 × 20회 × 2명 × 11과 =	35,200	천원
- 시설 임차료	300,000 × 5회 =	1,500	천원
- 워크숍 강사수당	250,000 × 2명 =	500	천원
- 원고료	10,000 × 10매 × 2회 =	200	천원
- 기타일반수용비	720,000 × 2회 =	1,440	천원
· 업무추진비		1,560	천원
- 워크숍 및 협의회	20,000 × 46명 =	920	천원
- 갈등조정기구 협의회	20,000원 × 16명 × 2회 =	64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 비용** ≍ 88,5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프로그램개발및통계관리비용) $_i$ = 88,5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및종합서비스제공' 예산 준용

- 대상 : 한국교육개발원(KEDI)

- 내용 : 학교폭력 실태 및 관련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학교폭력 대책 수립,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 및 학교의 적극적 대응 노력 유도

·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 및 콘텐츠 개발, 조사 결과 분석

- 소요예산 : 17,700천원

· 운영비		17,700	천원
- 교육청업무외부위탁비용 (한국교육개발원)	17,700원×1기관 =	17,70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상담·치유 등 지원 비용** ≍ 529,4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상담치유등지원비용) $_i$ = 529,4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2020년 '학생 위기문자 상담망 운영' 예산 준용

- 기간 : 2020. 3. ~ 2021. 2.

- 대상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주관교육청을 지정하여 주관교육청이 위탁기관과 협약 체결)

- 내용 :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학생·청소년 친화적 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한 학생 위기문자 상담망 운영

· 학생·청소년들이 편안하고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상담채널 운영을 통해 자살·자해 등 위기학생 발견 및 소통을 통한 자살예방·상담 지원

- 소요예산 : 105,880천원

· 운영비		105,880	천원
- 교육청업무외부위탁비용	105,880,000원×1청 =	105,88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교사 대상 연수 비용** ≍ 228,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교사대상연수비용) $_i$ = 228,0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